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 3차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료제출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 추가 및
위원의 자료제출요구 근거 신설〉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02호)

2024. 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자료제출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 추가	3
2. 위원의 자료제출요구 근거 신설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정호 · 어기구 · 박 정 · 허종식 · 김남희 · 윤후덕
이연희 · 박희승 · 이훈기 · 박해철 · 신영대 · 전재수
장종태 · 이수진 · 임미애의원(15인)

2. 제 안 일 : 2024. 8. 22.

3. 회 부 일 : 2024. 8. 23.

※ 의안번호 : 310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위원이 직접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위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며, 이로 인해 위원의 원활

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이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공직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보다 원활한 인사청문 제도의 운용과 국회의 국정통 제기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103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104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1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자료제출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 추가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직후보자에게도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요구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u>기타 기관</u> 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 ----- ----- ----- <u>기타 기관 및 공직후보자</u>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u>기관</u>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 ----- <u>기관 또는 공직 후보자</u> 는 제3항----- -----.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u>기관</u> 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⑤ -----제1항 또는 제2항----- ----- <u>기관 또</u> <u>는 공직후보자가</u> -----

현행	개정안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u>기관에</u> 이를 경고할 수 있다.	----- <u>제3항</u> ----- ----- <u>기관 또는 공직 후보자에게</u> ----- -----.

현행법은 임명동의안등에 첨부되는 증명서류 외에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율하고 있으나,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공직후보자의 부동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함에 따라 논란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자료제출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를 추가함으로써 자료제출과 관련된 소모적인 논란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자료 확보를 통한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위해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 제16조¹⁾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의 거부 주체로 공직후보자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자료제출요구 대상에 공직후보자를 추가하는 것은 체계정합성 측면에서도 적절한 조치로 보임.

1) 「인사청문회법」 제16조(답변등의 거부) ①공직후보자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공직후보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2. 위원의 자료제출요구 근거 신설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를 위원회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위원 개인이 공직후보자에게 직접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u>기타 기관</u> 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u><신설></u>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 ----- ----- ----- ----- <u>기타 기관 및 공직후보자</u> -----. ② <u>위원은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공직후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u>

현행법상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서는 위원회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필요하나, 실무적으로 개별 의원이 의원실 차원에서 직접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개별 의원이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므로 해당 요구를 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적시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통하지 아니하고 개별 의원이 공직후보자에게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사청문회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정활동의 신속성과 적시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국회법상 대외적 행정행위는 「국회법」에 따라 대표권²⁾을 갖는 의장·위원장 명의로 행하고 있다는 점, 합의제 기관인 국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의사의 결정은 의결로써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행법도 타 기관에 대한 자료요구는 원칙적으로 본회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³⁾ 규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위원에게 자료제출 요구권을 인정할지 여부를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표-3] 현행 국회관계법상 자료제출요구 요건 비교

법률	자료제출요구 요건
인사청문회법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국회법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의 의결
	청문회, 국정감사·조사 관련 자료제출요구는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폐회 중 개별 의원의 자료제출요구가 있으면 의장 또는 위원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 후 해당 기관에 요구
국정감·조사법	위원회·소위원회·반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2)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법」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3) 위원회 의결 외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제출요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여·야 간 정치적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한 위원회 의결이 용이하지 아니할 경우 사실상 자료제출요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국회법해설』, 국회사무처, 2024.)

참고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의회에서도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개별 의원에게 구체적인 자료제출 요구권을 규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표-4] 주요국 의회의 자료제출요구 요건 비교

국가	주체	내용
미국	(상원) 상임위, 소위원회	소환장에 의해 서신, 서적, 문서,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하원) 위원회, 소위원회	서적·기록·서신·각서·문서 등의 제출을 소환장 또는 그 밖의 조치에 의해 요구
영국(하원)	공법안심사위, 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의사규칙에서 자료제출요구권 부여 여부를 각 위원회별로 달리 규정
일본	각 의원(議院)과 각 의원의 위원회	각 의원(議院) 또는 위원회가 심사·조사를 위해 보고 또는 기록의 제출을 요구

* 자료: 「국회 자료제출 요구의 주요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2035호, 국회입법조사처, 2022.

문 의 처
02)6788-5015